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호버목”을 “제2조제2호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바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4호마목·바목에 따른 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및 산림조합법 제108조제1항제3호라목·마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다만, 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9의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금고.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여신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소관 중앙회(「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와 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임하는 경우 소관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변경등록의 예외) 법 제3조제1항 후단 괄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등록한 계획등록신청서에 대한 사소한 문구 또는 오타자의 수정
2. 단순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경미한 오류
3. 그 밖에 기재 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투자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2를 제5조의9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업무수탁인)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동안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일 것
2.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전문인력이 2인 이상 포함된 3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출 것
-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나. 유동화자산 관리 및 수탁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자금의 관리·운용·차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일 것

5.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출 것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33조의2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 신탁회사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공개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 유동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할 것. 다만, 자산유동화계획(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 또는 이에 준하여 예탁결제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다수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내역등을 최초의 유동화증권 발행 시 일괄하여 통지하는 경우로서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 해당 발행내역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에 대한 변동내용 :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할 것

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에 변동이 발생한 날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모두 완료된 날

② 법 제33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회차별 미상환 발행 잔액

2.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3.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및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한 자. 이 때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

초로 하는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의무 보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란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유할 것

2. 의무보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이 보유하여야 할 유동화증권 금액은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직·간접적으로 양도, 신탁 또는 제공한 자산의 양수도가액(명목가액)을 기준으로 의무보유 금액을 비례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3. 의무보유자는 유동화증권을 만기일(유동화증권의 만기일 전에 유동화자산이 전액 상환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매매하거나 이전, 헤지 등을 통하여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③ 법 제33조의3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3제1호에 의하여 유동화증권 원리금의 일부가 지급보증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유동화증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

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

제5조의5(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산, 파산, 부도 발생, 인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산관리계약, 업무위탁계약, 기타 중요한 계약의 해지, 변경 또는 재위탁이 있거나 계약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유동화자산의 양도등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송의 제기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조의7(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나. 최종 위반시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8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②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의3제1항에

다른 과징금의 부과 권한(단, 부과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제5조의8(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2. 제5조의5 가목·나목에 따른 주의·경고 조치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600

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800
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3호	1,000
라. 법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4호	600

나. 부과비율 등 예정금액의 산정,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수탁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 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 4. (생략)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 8. (생략)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신 설>	제2조(자산보유자) ----- ----- ---- 제2조제2호리목-----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9.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바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4호마목·바목에 따른 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및 산림조합법 제108조제1항제3호라목·마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다만, 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9의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

10. ~ 12. (생략)

<신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금고.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여신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소관 중앙회(「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와 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임하는 경우 소관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다.

10. ~ 12. (현행과 같음)

제2조의2(변경등록의 예외) 법 제3조제1항 후단 괄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등록된 계획등록신청서에 대한 사소한 문구 또는 오탈자의 수정
2. 단순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경미한 오류

<신 설>

3. 그 밖에 기재 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투자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2(업무수탁인)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동안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일 것

2.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전문인력이 2인 이상 포함된 3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나. 유동화자산 관리 및 수탁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자금의 관리·운용·차입에

<신 설>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일 것

5.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출 것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33조의2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 신탁회사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발

행내역을 공개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

유동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할 것. 다만, 자산유동화계획(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 또는 이에 준하여 예탁결제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다수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내역등을 최초의 유동화증권 발행시 일괄하여 통지하는 경우로서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 해당 발행내역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본문에 따른 통지할 것으로 본다.

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에

대한 변동내용 :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할 것

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에 변동이 발생한 날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 설>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
이 모두 완료된 날

② 법 제33조의2 제4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회차별
미상환 발행 잔액
2.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업
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3.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및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유동화증권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
산을 양도 또는 신탁한 자. 이
때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
증권을 보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의무보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과 절차”란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 이상을 보유할 것

2. 의무보유자가 둘 이상인 경
우에는 각각이 보유하여야 할
유동화증권 금액은 유동화전
문회사등에 직·간접적으로
양도, 신탁 또는 제공한 자산

의 양수도가액(명목가액)을
기준으로 의무보유 금액을 비
례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3. 의무보유자는 유동화증권을
만기일(유동화증권의 만기일
전에 유동화자산이 전액 상환
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까
지 보유하여야 하며, 매매하거
나 이전, 헤지 등을 통하여 의
무를 회피할 수 없다.

③ 법 제33조의3 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
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
다.

1. 법 제33조의3제1호에 의하여
유동화증권 원리금의 일부가
지급보증되고 남은 금액에 대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에 따른 공
공기관이 인수하는 유동화증
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에 따른 공공
기관이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
증권

<신 설>

<신 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

제5조의5(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
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

고)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보유
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
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
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업무
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이 해산, 파산, 부도
발생, 인가취소, 업무정지 또
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신 설>

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산관리계약, 업무위탁계약, 기타 중요한 계약의 해지, 변경 또는 재위탁이 있거나 계약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유동화자산의 양도등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송의 제기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조의7(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
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
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
속된 경우

나. 최종 위반시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8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②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3제3

<신 설>

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권한(단, 부과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제5조의8(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2. 제5조의5 가목·나목에 따른 주의·경고 조치

<u>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금융감독원의 원장</u>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생략)	<u>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①----- ----- ----- <u>금융감독원장</u>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